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0. 23 선고 2023가단11412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서미옥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지영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손영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센던트웬본

담당변호사 김준규

변 론 종 결 2024. 9. 25.

판 결 선 고 2024. 10.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와 E 사이에 2022. 5. 18.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고, 이를 C 주식회사에 통지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그 주식 100% 보유 주주이던 사람이다. D에 대하여 2017. 4. 28. 원고를 청산인으로 하는 해산등기가, 2017. 7. 26.

청산종결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E는 2014. 3. 7.경부터 2017. 3.경까지 D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회계, 세무 및 D 명의 법인통장 출납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5. 12. 22.경부터 2016. 12. 6.경까지 8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D의 자금 295,133,800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22. 2. 7.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3235호).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E가 항소하여 2023.

3. 8. E의 위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2노424호), 위 항소심판결은 2023. 3. 16. 확정되었다(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 E는 2022. 5. 18. 피고와 사이에, E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 또는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산종결등기를 마친 D에 대하여 주식 100% 보유 주주로서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D을 대위하여, D의 E에 대한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사해행위인 E와 피고 간 이 사건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1)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 요지

원고는 D를 대위하여, D의 E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E와 피고 간 이 사건 양도계약의 사해행위를 취소할 것과 이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나, 원고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2)

나.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등 참조).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의 피보전권리는 특정된 구체적인 청구권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하고, 주주의 지위에서 가지는 추상적인 권리에 기하여서는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으며(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다90 판결 등 참조), 주주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회사의 청산절차가 진행되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D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어 원고에게 D에 대한 구체적인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D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D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는 이상,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판사 강진명

별지

1) 원고의 2024. 7. 15.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10면 라항 참조. 원고가 E에 대하여 직접 어떠한 채권을 갖는지에 관하여는 원고의 구체적 주장,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본다.

2) 피고의 2024. 9. 5. 자 준비서면 참조.